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 ② (생 략)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액은 제31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정하며,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 총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액은 제29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정하며,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 총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신 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 제>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	<삭 제>

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제11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 ④ (생 략)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자명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 (생 략)	<삭 제> ⑦ (호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생 략)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16조(투자목적) (생 략)	**제14조(투자목적)**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2. ~ 9. (생 략) ② (생 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조번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2.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8. (생 략)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조번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8. (현행과 같음)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생 략)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제18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9조 제2호 내지 12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③ 제19조 제2호, 제3호, 제8호 본문,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7조 제2호 내지 12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17조 제2호, 제3호, 제8호 본문,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생 략)	**제19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생 략)	**제20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생 략)	**제21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생 략)	**제22조(수익증권의 판매)**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25조(판매가격) ① (생 략)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제23조(판매가격)** (조번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고객이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 ② (생 략) ③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4조(수익증권의 환매)** (조번 변경)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5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날부터 제9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0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	**제25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조번 변경)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날부터 제9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0영업일)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

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환매연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26조(환매연기)** (조번 변경)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제29조(일부환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27조(일부환매)** (조번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투자신탁재산 평가) (생 략)	**제28조(투자신탁재산 평가)**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31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 ③ (생 략)	**제29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조번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생 략)	**제30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33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생 략)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34조(이익분배) (생 략)	**제32조(이익분배)**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35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생 략)	**제33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36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생 략)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생 략)	**제34조(상환금 등의 지급)** (조번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관련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제37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	**제35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조번 변경)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다. ②(생 략)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익자총회) (생 략)	**제36조(수익자총회)**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39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 ④ (생 략) 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7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조번 변경)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0조(보수) (생 략)	**제38조(보수)**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41조(기타 운용비용 등) (생 략)	**제39조(기타 운용비용 등)**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42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생 략) 2. 신탁업자의 변경(제43조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 9.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0조(신탁계약의 변경)** (조번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신탁업자의 변경(제41조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생 략)	**제41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44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생 략)	**제42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45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4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	**제43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조번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2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6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2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46조(투자신탁의 합병) (생 략)	**제44조(투자신탁의 합병)**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시 및 보고서 등) (생 략)	**제45조(공시 및 보고서 등)**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48조(손해배상책임) (생 략)	**제46조(손해배상책임)**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49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생 략)	**제47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50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생 략)	**제48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제51조(관할법원) (생 략)	**제49조(관할법원)** (조번 변경)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